

■ 화제의 뉴스 ■

PF 지급보증 손실도 비용 인정...PF사업 활성화될 듯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딜에서 시공사들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직접 또는 대표이사를 통해 차주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차주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PF딜의 경우 대주들은 시공능력과 신용등급이 높은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중요한 담보로 생각하여 시공사들에게 여러 형태의 지급보증을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공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는 그러한 의무 부담 그 자체도 시공사에게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세금 혜택 역시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PF 지급보증이 공사 수주 및 시공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행위이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만큼 손비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 당국은 법인세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대법원이 시행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맡은 건설사가 구상채권을 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연대보증이라도 시행령에서 예외로 열거돼 있는 유형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7월 28일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통해 부담한 원리금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시공사의 PF사업 참여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건설업의 건전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대손금 문제로 건설사들이 발목 잡힌 부실사업장이 1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금번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완화되면 부실사업장 역시 빨리 정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PF 지급보증 손실도 비용 인정...PF사업 활성화될 듯\(2016. 7. 29.\)](#)